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6
----------	-----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외 10명
- 발 의 일 : 2015년 3월 27일
- 회 부 일 : 2015년 4월 2일
- 상 정 일 : 제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6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현찬 의원)

가. 제안 이유

-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안전사고 발생위험으로부터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등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청소년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시설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것임.
-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시설관리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¹⁾
- 최근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및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 등에 충분히 검토 및 반영되었다고 하겠음.
- 또한,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개정사항일 뿐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휴무(휴무)를”을 “휴무를”로 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의 원칙)</p> <p>① (생 략)</p> <p>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u>휴무(휴무)</u>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운영의 원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u>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p>